##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27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정을호·이기헌·이훈기

김남근 • 오세희 • 김영환

추미애 • 문금주 • 맹성규

김준혁 · 강유정 · 서삼석

모경종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 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 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 의 학교 복귀 지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②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